「출판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04. 3. 1. 제정 판 (시행 1998. 3. 1.) → 2006. 2. 28. 개정 판 (시행 2004. 3. 1.)

바뀜 7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56/compare?from=130&to=131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10:05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만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각종 출판물 간행과 출판물 검열을 위해 설치된 출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구성) 1.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일,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된다. 2. 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. 3. 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, 신학대학원장,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	**제2조(구성)**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. 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, 신학대학원장,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3조(심의 사항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. 1.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. 출판 선정 및 사전, 사후 검열 3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	**제3조(심의 사항)**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. 출판 선정 및 사전, 사후 검열 3.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조정 4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제4조(검열 대상) 본 위원회의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. 1.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.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	**제4조(검열 대상)** 본 위원회에서 검열할 수 있는 간행물은 다음과 같다. 1. 본교 이름으로 발행하는 교재 및 교양 도서 2. 교외에서 발간하는 본교 교직원의 출판물
제5조(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)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. 2.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	**제5조(위원장 직무 및 회의 소집)**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. 2.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6조(의사 정족수)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	**제6조(의사 정족수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8조(시행)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된다.	**제8조(시행)**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얻은 후 시행한다.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출판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출만물"을 "출판물"로 하고, "출판위원회 (이하"를 "출판위원회(이하"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장은 출판부장으로 한다.
③본 위원회의 위원은 출판부장, 신학대학원장, 위원장이 위촉하는 해당 분야 교수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 중 "심의 한다"를 "심의한다"로 한다.

제4조 중 "위원회의"를 "위원회에서"로 한다.

제5조 중 "총괄한다"를 "통괄한다"로 한다.

제6조 중 "의결된다"를 "의결한다"로 한다.

제8조 중 "시행된다"를 "시행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